파주시 공고 제 2026-2906호

대남 소음방송 피해 지원금 신청 3차 공고

「민방위기본법」 제32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6에 따라 파주시 내 대남 소음방송 피해 주민에게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아래 안내사항을 확인하시어 대남 소음방송 피해 지역 대상자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13일

파주시장

1. 신청 대상

2024년 7월 19일부터 2025년 6월 11일까지의 기간 중 파주시 내 대남 소음방송 피해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되어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처우법」 제2조에 따른 결혼이민자도 포함) **※ 1~2차 미신청자 대상**

■ 대남 소음방송 피해 지역

- **탄현면**: 대동리, 만우리, 오금1리, 오금2리, 문지리, 낙하리, 금산2리, 성동리 일부, 금승리 일부, 법흥2리 일부 (10개 리)

※ 성동리, 금승리, 법흥2리는 마을 내 일부지역만 해당되므로 신청 대상여부를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및 파주시청 안전총괄과 확인 후 신청바랍니다.

- **장단면**: 조산리(1개 리)

2. 신청 기간

탄현면, 장단면 : 2026. 11. 16.(월) ~ 11. 18.(수) 업무시간 내(09:00~18:00)

안전총괄과 민방위팀 : 2026. 11. 16.(월) ~ 11. 20.(금) 업무시간 내(09:00~18:00)

※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피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구비 서류

○ 공통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과거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소음 피해 신고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신청서 후면)
- 세대 대표자 선정서
- 통장 사본

※ 세부 사항은 붙임1의 필요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탄현면 주민: 탄현면행정복지센터 또는 파주시청 안전총괄과 민방위팀
- 장단면 주민: 장단면행정복지센터 또는 파주시청 안전총괄과 민방위팀

5. 문의처

- 탄현면행정복지센터 ☎ 031-940-8082
- 장단면행정복지센터 ☎ 031-940-8252
- 파주시청 안전총괄과☎ 031-940-4151

6. 대남소음방송 피해 신고 필요서류 등 신고서 서식(붙임1~붙임4)

붙임1 **대남소음방송 피해 신고 필요서류(요약)**

신고인	구비서류[공통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과거 주소 변동 이력 포함)]
본인	신분증 사본, 피해신고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세대 대표자 **(동일 세대)**	세대 대표자 신분증 ※우편접수시에는 신분증 사본 세대원별 신분증 사본 세대 대표자 선정서 세대원별 피해신고서 각 1부**(세대원 전원 작성)** 세대원별 본인명의 통장사본 ※미성년자의 피해신고시, 등본 상 부모가 둘다 없으면 해당 미성년자의 가족 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 법정대리인 신분증 필요
대리자 **(동일 세대 외)**	수임자 신분증 ※우편접수시에는 신분증 사본 위임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 위임자별 피해신고서**(위임자 전원 작성)** 위임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외국인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자** 또는 **결혼 이민자)**	피해신고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표에 기록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에 기록되지 않은 경우)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출입국사실증명
사망자 (상속인)	피해신고서 대표상속인 주민등록초본 및 통장사본 사망자 말소자초본(상세) 사망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대표상속인을 제외한 상속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계좌 사용 불가능자	압류사실 기재된 잔액 증명서(금융기관 발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법원발급) 기타 이에 준하는 계좌 압류 확인 가능 서류

붙임2 **소음 피해 신고서 서식**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신설 2025. 5. 30.>

소음 피해 신고서

※ 제3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활용 동의 및 확인사항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본인 []부모 []형제 []기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한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휴대전화	유선전화	
주소	주민등록주소		
	실거주지 주소 ※ 주민등록지와 불일치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피해 지원금 지급통장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확정			

3. 거주기간 정보

거주 제외 기간	① [] 현역병으로 군 복무 ([]육군 []해군 []공군 []해병 []의무경찰 []의무소방 []대체복무)	
	대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확정	
	② [] 이민 등 국외체류	
	대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확 정	

<table>
<tr><td rowspan="4">거주
제외
기간</td><td colspan="2">③ [] 교도소 등에 수용</td></tr>
<tr><td>대상기간</td><td>년 월 일 ~ 년 월 일</td></tr>
<tr><td>확정</td><td></td></tr>
<tr><td colspan="2">④ [] 그 밖의 사유
(사유:)</td></tr>
<tr><td>대상기간</td><td>년 월 일 ~ 년 월 일</td></tr>
<tr><td>확정</td><td></td></tr>
</table>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4조의6제3항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65조의4제1항에 따라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피해 지원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1부 2. 교도소 등에 수용된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교도소 등에 수용된 기간이 있는 사람만 해당 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2. 병적증명서 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거주지 확인, 피해 상황에 대한 조사, 피해 지원금의 산정·결정 및 피해 지원금 지급을 위한 자료로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활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거주제외 기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입국·병무·교정 관계 기관에 제공·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확인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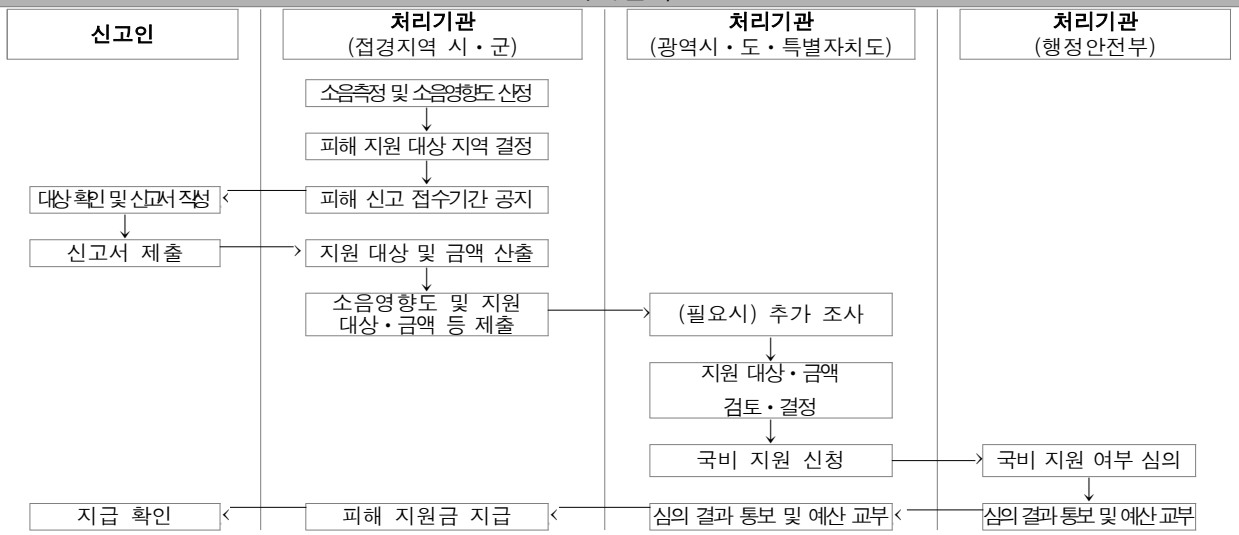
1. 피해 지원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추가로 관련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 지원이 되지 않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본 신고서를 비롯하여 작성·제출하신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3. 「민방위기본법」 제32조의3에 따른 지원금을 받을 사람이 같은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만큼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위의 1번부터 3번까지의 확인사항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에는 해당 사항에 √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신고서는 피해 지원금 지급 등의 지원을 위하여 활용되므로, '2. 피해자 정보'를 정확히 작성합니다.
3. '4. 거주기간 정보'의 ①란에는 현역병으로 복무한 경우 구체적으로 육군·해군·공군, 해병대,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대체복무요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와 지원 대상기간 중 복무기간을 적습니다.
4. '4. 거주기간 정보'의 ②란에는 이민, 여행 등 국외체류한 경우 지원 대상기간 중 국외체류기간을 모두 적습니다.
5. '4. 거주기간 정보'의 ③란에는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 지원 대상기간 중 수용기간을 적습니다.
6. '4. 거주기간 정보'의 ④란에는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적고 지원 대상기간 중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을 적습니다.
7. 신고인은 이 신고서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공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한 피해 신고 접수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붙임3 **세대 대표자 선정서**

세대 대표자 선정서

세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또는 전화번호:)		

본인들은 위 세대 대표자에게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제4항,「민방위 피해지원 기준 및 지원금 지급 운영지침」 제14조의제3항에 따른 본인들의 소음 피해 신고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 임 자						
1	대표자와의 관계	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2	대표자와의 관계	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3	대표자와의 관계	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4	대표자와의 관계	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5	대표자와의 관계	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6	대표자와의 관계	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첨부서류	위임자(위임자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	수수료 없 음

세대 대표자 선정방법

1. 세대원 또는 세대원의 법정대리인 간에 합의하여 세대원 중 성년자를 세대 대표자로 선정합니다.
2.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고, 위임자가 미성년자 등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4 **소음피해 신고 위임장**

소음피해 신고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또는 전화번호
	위임 사유 * 이민 등 국외체류[], 입원[], 교도소 등 수용[], 기타[]

본인은 아래의 수임인에게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제4항, 「민방위 피해지원 기준 및 지원금 지급 운영지침」 제14조의제3항에 따른 본인들의 소음피해 신고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사람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또는 전화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유의사항

1.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